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 체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이 요청하면 해당 과오납금을 곧바로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업종·직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6. ~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72조의2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구목을 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자료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 ---------- ---------- ---------- ---------- 6개월-----. ---------- ---------- ---------- ---------- 그렇지 않다.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아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금액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해야 한다. 이 경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72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제72조의2(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③ (생 략)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하여야 한다.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나이, 업종·직종---------- 공개해야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609